플래스틱 가공제품“ 규격화 ”시급

플래스틱조합 PL 인증제도 시행 … 95년말 65개기업 인증 저조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래스틱기업들이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심을 가지는 등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PL 품질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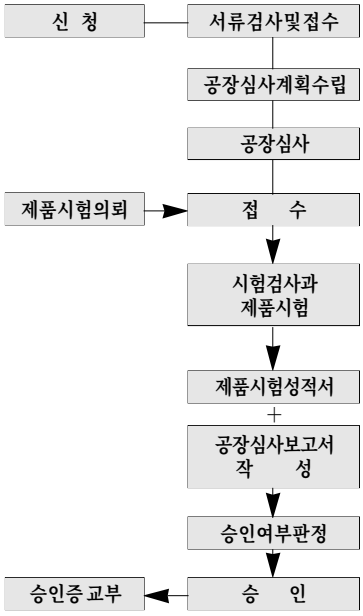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 이국노)에서 플래스틱제품의 품질보증마크인 PL(Plastic Liability)마크를 부여, 생산기업들이 품질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운영요강을 제정하여 94년부터 저가의 수수료로 PL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PL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94년 대동산업사의 농업용 PE필름 인증을 시작으로 95년 현재 65개기업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PL마크는 KS마크와 유사한 품질인증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품질보증마크이다. 즉 KS마크가 정부에서 주관하여 주는 품질인증제도인 반면, PL마크는 정부공인기관의 위임을 받아 산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명될 수 있다.

KS와 PL의 차이점은 두가지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KS는 품질관리사 1급 내지 2급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PL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QC(Quality Control) 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두번째 차이점은 KS가 전공정에 관한 검사설비를 완비해야 되는데 반해, PL은 정부공인기관과 사용위탁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로 알려졌다.

이같은 PL마크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에서 WTO체제에 따라 보호주의가 퇴색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제품과의 경쟁에 대응, 자율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규정함으로써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촉진법 상에 PL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품질인증이 인정된 제품이므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명문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완전해제됨으로써 단체표준승인을 받은 품목을 우대, 중소기업간 품질경쟁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PL 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신청품목은 ▲농업용 PE필름 ▲포장용 PE필름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 ▲통신용 합성수지 전선관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수도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경질비닐전선관 등 10개품목이다.

외국의 인증사례를 보면, 플래스틱제품의 경우 먼저 단체표준을 거친 후 국가규격, 국제규격의 순으로 품질인증 발달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체표준이 없이 국가규격인 KS만 먼저 시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PL 품질인증 절차는 먼저 해당기업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거쳐 판정하게 되는데 판정난 후에도 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PL 품질인증을 획득한 생산기업은 PL마크를 자사상품에 부착할 수 있고 이에따른 품질보증을 조합

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조합이 PL품질인증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한편, 가공제품 규격을 마련해 제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6/3/18>